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2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7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24호(號)

1926(大正 15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0(大正 9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27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사와야마형제상회[澤山兄弟商會] 연락화물운송규칙(聯絡貨物運送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1조(條)나의호(號) 접속역(接續驛) 중(中) 「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초량역(草梁驛: 시모노세키[下關], 모지[門司], 고쿠라[小倉] 착(著)에 한[限]함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3조(條)제2호(號) 중(中) 「초량착(草梁著)·항(港) 간(間)」을 「부산착(釜山著)·항(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조(條)제3호(號) 중(中) 「에 있어서 초량(草梁) 도착(到着) 후(後)」를 「접속지(接續地)에 있어서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8조(條) 중(中) 「혹은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철도창고(鐵道倉庫) 내(內)」를 삭제(削除)함.

제9조(條) 중(中) 「초량(草梁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10조(條) 중(中) 「또는 초량(草梁)」 및 제2항(項)을 삭제(削除)함.